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8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8

라. 상정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총무위원회(96. 6. 19)상정

마.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총무위원회(96. 6. 20)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회관의 관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, 시민회관 관리계를 폐지하고자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시민회관의 직급 하향조정
 - 현 행 : 지방행정 5급
 - 조 정 : 지방행정 6급
- 시민회관 기구조정
 - 관리계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시민회관에 기술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은 있는지요?	○ 기술직을 보강해 주고 기능직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.
○ 시민회관 정원은 몇 명입니까?	○ 18명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6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시민회관의 관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고, 시민회관 관리계를 폐지하고자
조례개정

주요골자

- 시민회관장의 직급 하향조정
 - 현 행 : 지방행정 5급
 - 조 정 : 지방행정 6급

○ 시민회관 기구조정

- 관리계 폐지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행정사무관으로”를 “지방행정주사로”로 하고, 동조례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관장) ①	시민회관에 관장을 두며, 지방행정사무관을 보한다.	제4조(관장) ①	지방행정주사
②(생략)		②(현행과 같음)		
③	시민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리계를 두며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	(삭제)		